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계획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내실화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천안(정) 천안계통 비상연계관로 신설공사의 안전점검기관 선정 추진

1. 추진배경

□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전문안전점검기관을 통한 정기안전점검 수행 필요

* 법 개정('19.12)에 따라 발주자가 점검기관을 지정 후 시공사에 통보

□ (설계현황) 안전관리계획 상 흠막이 지보공 2회 점검, 1종시설물* (광역상수도시설) 3회 점검 계획(정기 2회, 초기 1회) 계획으로 점검기관 지정 및 적기 점검시행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5의2(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2. 시행계획

□ (시행방안) K-water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절차 준용

*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절차 수립시행(안전혁신실-3103, 2020.12.15.)

□ (대상기관) K-water 등록 안전점검 수행기관 230개 社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kwater.or.kr 게시판, 2025.12.31.기준)

□ (지정기준) 지정공고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평가

○ (종합평가) 추정가격에 따른 사업수행능력·가격 배점기준 적용

추정가격	사업수행능력	가격	심사방법	낙찰하한
고시금액 (2억)미만	20점 유사용역실적(10) 신용등급(10)	80점	$80 - [5 \times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84.995%

□ (지정절차) 최저가(낙찰하한율 이상) 기관 순서로 사업수행 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의 합산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평가 후 결정



□ (점검비용) 968,000원(VAT 포함)

○ (산출근거) 순공사비* × 안전점검 요율(0.05%) + 부가세 10%

* 순공사비 = 총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국토부고시 제2022-791호

구 분	순공사비(원) (A)	요율(%) (B)	용역단가(원) (A×B=C)
정기안전점검	1,100,152,503	0.05	550,000
초기점검	1,100,152,503	0.03	330,000
계			880,000
부가가치세			88,000
도급용역비(백단위 절사)			968,000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안전관리)**

-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②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발주자는 제6항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지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접수기간·수행기관 지정방법·사업내역·제출서류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3.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4.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5.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비용
-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 ① **규칙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②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 ③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정의)**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 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천안(정) 천안계동 비상연계관로 신설공사		
2. 시 공 사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		
3. 발 주 자	한국수자원공사 천안권지사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김 형 길		
5. 공사개요			
공 사 비	983,000,000원	공사기간	2025.12.23.~2026.06.20
현장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원		
공사내용	상수도 공사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밀안전점검[<input type="checkbox"/>] 초기점검[<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input type="checkbox"/>]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983,000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02 월 09 일

신고인 설 찬 진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합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부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천안(정) 천안계통 비상연계관로 신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기관 지정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공고명 : 천안(정) 천안계통 비상연계관로 신설공사 정기안전점검기관 지정공고

2. 안전점검 개요

- 가. 점검건명 : 천안(정) 천안계통 비상연계관로 신설공사
- 나. 점검대상 :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 참조 (붙임1)
- 다. 점검비용 : 금 968,000원(VAT 포함)

3.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천안(정) 천안계통 비상연계관로 신설공사
- 나. 공사개요 : 관로신설(L=128m, DCIP, D400mm)
- 다. 공사현장 : 충남 천안시 청당동 일원
- 라. 공사금액 : ₩ 983,300,000원 (VAT 포함)
- 마. 공사기간 : 2025. 12. 23. ~ 2026. 06. 20. (180일간)
*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90일 계약연장 예정
- 바. 발 주 자 : 한국수자원공사
- 사. 시 공 사 : 주식회사 대현종합건설(100%)

4. 참가자격

- K-water 등록 안전점검 수행기관 230개 社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kwater.or.kr 게시판, 2025.12.31.기준)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입찰참가 및 가격입찰 : 2026 02. 13.(금) 09:00 ~ 2026 02. 20.(금) 18:00

- 가. 제출서류 : 안전점검기관 지정요청서 1부 (붙임2)
- 나. 제출장소

(우편)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로 301-96 K-water 천안권지사 시설관리과
(이메일) sang9395@kwater.or.kr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041-629-4252(담당 : 상희준 대리)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2. 23.(월) 14:00, K-water 천안권지사 상황실

8.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및 장소

가. 제출기한 : 2026. 02. 24.(화) ~ 2026. 03. 03.(화)

나. 제출장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로 301-96 K-water 천안권지사 시설관리과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접수

(우선 평가를 위해 이메일 우선 접수, sang9395@kwater.or.kr,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부

3) 최근 5년내 유사용역이행실적 1부 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1식

마. 개찰 후 최저가격 제시한 1개 업체에 서류제출 통보(2순위 이상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통보 임시 보류)하며, 1순위 예상 업체는 우선 평가를 위해 개찰 통보일시로부터 만3일(영업일 기준) 내 위의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우선 제출하며,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는 서류제출 마감기한 전까지 적격 검토 및 회신

바. 예상 1순위 업체가 적격일 경우 해당 업체를 점검기관으로 지정하며, 부적격일 경우 차순위 업체에 서류제출 통보하며, 해당 업체는 다음 7일 내 위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9. 안전점검기관 지정방법

가.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기준」 적용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84.995%) 이상)을 제시한 업체순으로 사업수행능력과 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지정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순위에 따라 수행능력평가를 하기위해 해당업체에 서류제출 요청시 7일 이내에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천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사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등록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점검횟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15%내외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안전점검기관 지정결과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마. 계약 즉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과업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천안권지사 담당자 상희준 대리, ☎ 041-629-425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 천안권지사

[붙임[붙임1] 세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

구분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구분	공사 내용	점검 차수
영 98조제1항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상수도		정기 2회 초기 1회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			
	10층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영 제101조의2제1항	높이가 31미터 이상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가설 구조물	관로 공사	정기2회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높이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총횟수				정기4회 초기1회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따라 점검차수는 최소2회 이상 실시

붙임 4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기준)

[별표 5]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2억2천만원)인 안전점검(제5조제4호 관련)

구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배점 한도	등 급	평가 점수
I.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최근5년내 유사용역 이행 실적(인정범위 및 가중치는 사업주 관부서의장이 정함)	$\frac{\text{용역실적금액}}{\text{예정용역비}} \times 2$	10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0%초과 - 10%미만 ※ 해당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10 8 6 4 2
II.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별표6> 참조	10
II. 입찰 가격		$80 - [5 \times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80		80

주)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0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발신기관명

수신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경유)

제 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통보합니다.

1. 현 장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4. 안전점검 지정 현황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밀안전점검[<input type="checkbox"/>] 초기점검[<input type="checkbox"/>]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input type="checkbox"/>]				
건설공사 종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 개 구 분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6

안전점검 대가 요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8]

- 상수도 관로 부분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요율 0.05% 적용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전체 요율(%)	정기안전점검 요율(%)	초기점검 요율(%)
교량		100m	0.66	0.44	0.22
		300m	0.29	0.20	0.09
		500m	0.20	0.14	0.06
		1,000m	0.11	0.08	0.03
		2,000m	0.08	0.06	0.02
		4,000m	0.05	0.04	0.01
		8,000m	0.03	0.021	0.009
터널		300m	0.37	0.26	0.11
		500m	0.30	0.21	0.09
		1,000m	0.18	0.10	0.08
		2,000m	0.11	0.07	0.04
		4,000m	0.08	0.05	0.03
댐		-	0.15	0.11	0.04
하천	수 문	-	4.86	2.78	2.08
	제 방	1,000m	0.45	0.28	0.17
		2,000m	0.27	0.15	0.12
		4,000m	0.18	0.10	0.08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	4.86	2.78	2.08
하 구 둑		-	0.17	0.10	0.07
수도	취수시설,	-	0.33	0.22	0.11
	취수가압펌프장	-	0.36	0.23	0.13
	정수장, 배수지	-	0.08	0.05	0.03
	상수도 관로	-	0.08	0.05	0.03
공공하수처리시설		-	0.08	0.05	0.03
항만	계류시설	1만톤급	0.12	0.08	0.04
		5만톤급	0.10	0.06	0.04
		20만톤급	0.06	0.04	0.02
	갑문시설	-	0.17	0.12	0.05
건 축 물		5,000m ²	0.52	0.35	0.17
		10,000m ²	0.34	0.24	0.10
		30,000m ²	0.16	0.11	0.05
		50,000m ²	0.13	0.09	0.04
		100,000m ²	0.11	0.08	0.03
옹 벽		100m	3.63	2.06	1.57
		200m	2.59	1.47	1.12
		500m	1.91	1.08	0.83
		200m	0.99	0.56	0.43
절토사면		400m	0.71	0.40	0.31
		800m	0.45	0.26	0.19